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의안번호 : 제2218호
- 나. 제 안 자 : 김경 의원 외 12명
- 다. 제 안 일 : 2024. 10. 16.
- 라. 회 부 일 : 2024. 10. 18.

2. 제안이유

- 「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」에 따라 다문화 아동·청소년의 이중언어 학습이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에서 직접 교육으로 확대됨으로써,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아동·청소년이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규정 신설
(안 제7조의2제1항제2호 신설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(2024. 10. 23. ~ 10. 27.) 결과 : 의견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(글로벌도시정책관) : 원안 가결

5. 검토 의견

가. 조례안 개요

- 이번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가 “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(2023-2027)”을 수립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정책이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에서 직접 교육으로 확대되었으므로, 서울시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규정(안 제7조의2제1항제2호)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현행	개정안
제7조의2(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,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1. (생략) <u><신설></u> 2. ~ 4. (생략) ② (생략)	제7조의2(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3. ~ 5. (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나. 검토 내용

“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정책 현황”

-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2009년부터 정부와 각 시·도 교육청의 주도로 시작되었음¹⁾
- 이후 2014년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목표로 ‘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’을 시범적으로 시행 하였고, 2023년에는 “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(2023-2027)”을 발표하면서 ‘이중언어 직접교실’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음
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**다문화가족**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 -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**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**
 - 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**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**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**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**
2. “**결혼이민자등**”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
 - 나. 「국적법」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

- 서울시는 정부의 이중언어 교육정책에 참여하고 있고, ‘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사업’은 자치구 가족센터 내에 배치된 이중언어코치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, ‘이중언어 직접교실’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가족센터 13개소²⁾에서 주요 이용자 특성 및 학습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음

1) “우리나라 이중언어 교육의 현황과 도전: 다문화가족 자녀를 중심으로”, 2021.6. 참고

2)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(자치구 가족센터 내) 13개소

〈 서울시 이중언어 교육 관련 예산 현황 〉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(안)
이중언어 환경조성	848,575	1,045,890	910,750	952,250
이중언어학습 지원 (이중언어 직접교실)	-	-	476,840	204,100
합 계	848,575	1,045,890	1,387,590	1,156,350

※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소관, 국비 30%, 시비 70%로 편성

“조례 개정의 근거”
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,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규정을 반영하여 시장의 지원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적법하다고 하겠음
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다문화가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 -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 - 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2. **“결혼이민자등”**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**결혼이민자**
 - 나. 「국적법」 제4조에 따라 **귀화허가를 받은 자**
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0조(아동·청소년 보육·교육) ① ~ ② (생 략)
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,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“조례 개정의 타당성”

-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능력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 적응에 중요한 요소이므로, 이중언어 교육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자존감과 문화적 다양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며, 자녀들은 물론 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
- 또한,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서울시의 포용성과 사회 통합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하겠음
- 관련 법령과 현행 조례를 통해서도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을 통한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나,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‘이중언어 교육’ 지원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를 명시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

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

제7조(지원의 내용 및 범위)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4.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, 부부교육, 부모교육,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
11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의2(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,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
2. 중도입국자녀의 사회·문화 적응 지원
3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·교육 지원

다. 종합 의견

- 이번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정체성 형성과 원활한 사회 적응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‘이중언어 능력 교육’의 실시와 그에 따른 정책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0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으며,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서울시의 포용성과 사회 통합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됨

□ 비전 및 목표



1. 다문화 아동·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

1-③. 다문화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

② 다문화 아동·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인재 양성

□ 이중언어 교육 및 인재DB 활용 활성화 여가부, 교육부

○ 가족센터 내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·심화 학습 과정 실시

- 결혼이민자 부모의 언어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이중언어 교실 운영 및 사업대상 확대

※ 기존 이중언어 지원은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위주였으나, 이중언어 직접 교육을 선호하는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개선

- 이중언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, 온·오프라인 병행 수업 도입 추진

현 행	개 선
■ 대상: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■ 내용: 다문화가족 부모 대상 이중언어 사용코칭 ■ 운영방식: 센터 방문	■ 대상: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■ 내용: <u>다문화가족 자녀가 직접 이중언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</u> 추가 ■ 방식: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<u>온-오프라인 혼합 방식</u>

- 우수한 이중언어 능력을 갖춘 다문화 아동·청소년을 인재DB에 등록하고, 국제교류·해외봉사단, 장학생 추천 등 적재적소에 연계

- 국립국제교육원, 대학 등과 협력하여 이중언어 인재양성을 위한 온·오프라인 강좌 운영 추진

* 초·중·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

□ 국제교류 참여를 통한 다문화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

여가부, 외교부, 산업부

- 청소년국제교류, 해외자원봉사단, 국제 청소년 서밋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다문화 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

- 이중언어 능력과 특정분야 전문성을 갖춘 청년층 차세대 무역전문인력 양성(다문화 무역인) 추진

□ 사업내용

○ 이중언어 부모·가족 코칭(구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사업)

- 대 상 :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
- 사업내용 :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으로 부부·가족단위 코칭 및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 자율적으로 운영
 - ※ 단, 이중언어 부모·가족 코칭 사업만 운영하는 곳은 이중언어교실(10차시) 운영
 - ※ 다문화가족 자녀가 이중언어 직접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녀의 부모는 이중언어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(대면 원칙)해야하나, 필요시 비대면 코칭 프로그램 운영 가능
- 운영인력 : 센터 내 배치된 이중언어코치

○ 이중언어 학습 지원

- 대 상 : 이중언어 부모 코칭에 참여한 가족의 18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
- 사업내용 ※ 영어 제외
 - (이중언어 직접교육) 이중언어 강사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 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운영(온·오프라인 학습 병행)
 - (온라인 학습권)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인 학습 이중언어 온라인 학습권 지원
- 운영인력 : 이중언어 코치 또는 이중언어 강사
- 교육기관 : **자치구 가족센터 24개소**
- 교육과정 : **시설 주이용자 특성, 학습수요 등에 따른 기관별 운영**
- 교육실적('24년 11월 기준 누적) : 참여인원 65,144명